



407226848_0001380_02_02

산업단지 보조금(국비) 지원 안내

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단지 내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재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

1 지원한도

- '14년도 재원: 100억원
- 산업단지 당 최대 10억원 한도 (소요비용의 50% 지원)

2 지원조건

- 산재예방시설 설치 공간은 산업단지관리공단(한국산업단지공단 포함), 사업주 협의회 대표 또는 개별 사업주가 자가 또는 건물임차 등을 통해 조달
 - 건물 건축비, 관리비 및 운영비 등은 제외
 - 신청인의 소유건물(공간)을 설치공간으로 제공한 경우, 설치 공간의 전세금 등을 신청인 부담금(매칭 비용)으로 인정

【 설치공간에 대한 신청인 부담금 인정범위 】

-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
 - ▶ 실제 계약서상의 금액을 인정
 - * 해당 건물내 다른 공간의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도 인정
-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
 - ▶ 인근 유사건물의 시가로 인정
 - * 인근 유사건물 시가 인정기준 → 부동산 거래 서류(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) 사본
 - * 인근 시가 증빙이 어려울 경우, 공시시가로 인정
 - * 과거 부동산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당시의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인정(필요시 자가상승률 반영)
 - * 기타 실제 임대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(산업단지공단 임대료 시세분석 자료 등)
 - ▶ 지자체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받은 경우
 - * 실제 임대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관련 문서상의 금액을 인정
 - ▶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은 경우
 - * 신청인 부담금 불인정
 - * 설치공간에 대한 면적을 고려하여 신청인 부담금 인정
 - ex) 100평 공간(임대가 1억원) 중 30평을 활용할 경우 3천만원 인정

※ 참고 : 전세가 환산식 (전세금=보증금+월세금×100)

- 건물 리모델링(철거·구조공사, 전기공사, 소방공사, 방수 등)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투자금액으로 인정
- 산업단지 이외의 장소(공간)에 산재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산재예방시설을 설치하면 인정
- ex) 특정 사업장내에 설치하더라도 타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, 산업단지 경계(도로 건너편 등)를 벗어나더라도 산업단지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 등

- 착수금 선지급 조치
 - 지원결정금액의 70% 이내 선지급 가능
(단,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)
- 설치기간: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

3 산재예방시설 지원품목 (예시)

- 안전보건 교육시설
 - 빔 프로젝트, 방송장비, 책상, 의자, DVD-CD 등 교육교재, 교육용 컴퓨터 등
- 안전보건 자료실 및 상담실
 - 안전보건 도서 등 관련 자료, 자료 게시대, 책장, 상담용 책상, 의자, 컴퓨터 등
- 체력증진시설
 - 헬스장·탁구장·풋살장·배드민턴장·테니스장·수영장 설비, 에어로빅실 등
- 목욕·샤워시설
-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
 - 안마기, 혈압계 등 간이검진장비
 - 근로자 안전보건 의식교취 또는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시설로 필요시 자금지원 검토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

4 신청방법 / 문의

- 신청자격 :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
 - ① 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관리공단(한국산업단지공단 포함)
 - ② [지자체 또는 산단공단] + [입주기업대표자 협의회 등 사업주 협의회 대표]
 - ③ [지자체 또는 산단공단] + [산업단지 내 사업주]
 - * 참여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로 신청 당시 보험료를 체납중이지 않아야 함
- 제출서류
 - ① 참여공문서, 자금지원신청서【붙임1 참조】
 - ② 동의서, 서약서 및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일체【붙임2~4 참조】
- 제출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
 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 자율안전지원팀(681-230 울산시 중구 종가로 400)
- 문의 : Tel. 052-7030-625~7, Fax. 052-7030-315
- 신청기한 : 2014년 8월 15일 자금신청서 접수분 까지